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안 건 명

-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- 제출일자 : 2017년 11월 20일(월)
-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3. 의안 회부일자

- 2017년 11월 20일(월)

4. 관계법규

-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
-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

5. 개정이유

「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장애인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고, 용어 및 띄어쓰기 등 문구를 정비하고자 함.

6. 주요내용

- 제5조제1항의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
-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 및 표현 등 정비

7. 검토보고

- 본 개정조례안은

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정비 및 「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에 따라 “폐질등급”을 “장애등급”으로 변경하고,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 및 표현 등 문구를 정비하고자하는 것임.

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안 건 명

-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- 제출일자 : 2017년 11월 20일(월)
-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3. 의안 회부일자

- 2017년 11월 20일(월)

4. 관계법규

- 「지방공기업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5. 제정이유

- 민법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 금치산·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한정 후견·성년후견제가 시행됨으로써 조례에 규정된 금치산·한정치산의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

6. 주요내용

- 가.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임원 결격사유 개정
- 나.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 및 표현 등 정비

7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조례 제11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임원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·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·피한정후견인으로 하는 등 현행 상위법 등에 적합하도록 하고,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용어 및 표현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